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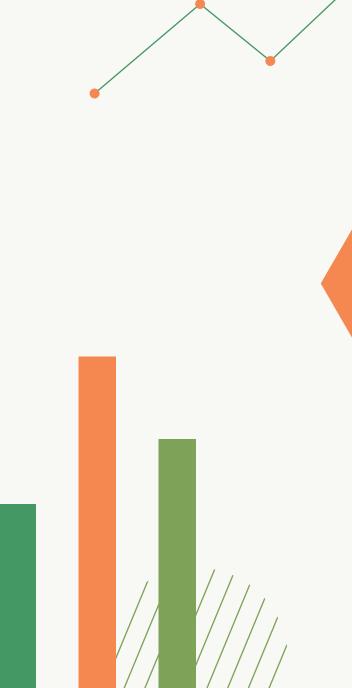
20 24 Vol.01

대사관에서 알려드리는

인도 경제 소식지



2024-01호 (2024.4.26.)



차례

1	한-인도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인도 교역 현황 2 한-인도 투자 현황 3 한-인도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06
2	HS와 품목분류와 분쟁해결 _ 최영훈 관세관 1 HS와 품목분류와 검색방법 2 품목분류 개요 3 품목분류 검색방법	08
3	주재원 GST 부과 이슈 _ 이지민 국세관 1 주재원 GST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과세 동향	13

2 과세 쟁점과 관련된 참고할 인도 GST 법

3 대사관 대응방향

18

- 1 글로벌 기업 인도 GCC 설립 수요 급증
- 2 방대한 테크(tech) 인재풀이 GCC 설립 유인
- 3 주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글로벌기업 GCC 유치에 적극 참여
- 4 미국, 캐나다 중심에서 EU, 아시아 기업까지 설립 가세, 우리 기업도 관심 필요

* GCC(Global Capability Centers) 글로벌역량센터: 글로벌 기업이 R&D, 제품 설계, 고객 애로사항 처리 등 다양한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역외(offshore) 조직



인도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제한 산업 및 법인형태 비교) _ 유지혜 대사관 경제과 자문 변호사

- 1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
- 2 인도 진출 유형

한-인도 교역 및 투자 현황

- 1 한-인도 교역 현황
- 2 한-인도 투자 현황
- 3 한-인도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1 --- **한-인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는 증감률)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12,782 (12.4)	12,030 (-5.9)	11,596 (-3.6)	15,056 (29.8)	15,606 (3.7)	15,097 (-3.3)	11,937 (-20.9)	15,603 (30.7)	18,870 (20.9)	17,978 (-4.9)
수입	5,275 (-14.7)	4,241 (-19.6)	4,189 (-1.2)	4,948 (18.1)	5,885 (18.9)	5,566 (-5.4)	4,901 (-11.9)	8,056 (64.4)	8,897 (10.4)	6,729 (-24.4)
무역수지	7,507	7,789	7,407	10,108	9,721	9,531	7,036	7,547	9,973	11,219
총교역액	18,057	16,271	15,785	20,004	21,491	20,663	16,838	23,659	27,767	24,70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한-인도 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신고기준), ()는 신고건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1980년이후)
대한	건수	10	6	11	13	16	12	10	17	15	733
투자	금액	2.5	1.4	1.7	1.9	96.6	1.4	2.0	81.47	1.66	762.15
대인도	건수	264	270	311	410	452	308	246	256	219	4,953
투자	금액	392	392	949	846	686	588	352	433	415	10,213

* 대한 투자통계(2023.1-12월말 실적 기준) / 대인도 투자통계(2023.1-9월말 실적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3 --- 한-인도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23년, MTI 4단위 기준, 단위 : 백만불, %)

순	수출			수입		
위	주요품목명	금액	증감율 (%)	주요품목명	금액	증감율 (%)
1	집적회로반도체	1,919	-14.2	나프타	1,632	-38.9
2	합성수지	1,748	9.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876	-45.5
3	자동차부품	1,199	4.3	의약품	588	13.7
4	열연강판	887	3.8	연괴 및 스크랩	250	-4.6
5	윤활유	851	-8.1	합금철	249	-5.0
6	기초유분	561	37.7	박류	220	-8.1
7	아연도강판	503	10.9	자동차부품	190	8.1
8	아연괴 및 스크랩	444	21.3	기타정밀화학원료	184	-16.8
9	냉연강판	439	-10.4	농약	104	-22.6
10	기타석유화학제품	435	-8.2	면사	84	-28.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HS와 품목분류와 분쟁해결

최 영 훈 관세관

- HS와 품목분류와 검색방법
- 2 품목분류 개요
- 3 품목분류 검색방법

안녕하세요. 대사관에 근무하는 최영훈 관세관입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바로 세관의 통관절차이고, 통관절차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바로 품목분류입니다. 품목분류에 대해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다섯 회로 구분하여 기고할 예정입니다. 품목분류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91-11-4200-7064 이메일 cyh3579@korea.kr

1차 HS와 품목분류와 분쟁해결

2차 품목분류 통칙 및 분류방법

3차 국가간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 대응방안

4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방법

5차 품목분류 분쟁사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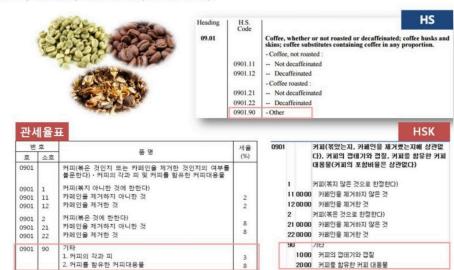
HS와 품목분류와 검색방법

HS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통계수집,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서의 통일된 분류를 위해 상품의 명칭을 숫자코드와 연결하여 만든 상품분류표(Nomenclature)입니다. HS의 정식명칭은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으로, 흔히 약칭으로 「Harmonized System」 또는 「HS」라고 불리며, 국문으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라고 합니다. 국제조약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현재 183개의 국가가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협약은 전문, 본문(20개 조항), 부속서(HS품목분류표)로 구성되고 정본은 영어와 불어로 각 한 부씩 작성되어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량과 새로운 상품이 증가하고, 상품거래형태도 복잡해짐에 따라 상품분류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무역 원활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세계관세기구(WCO)는 국제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국가간 논의를 시작하였고 1988년에 HS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체약국은 HS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자국의 관세와 통계품목분류표를 HS 체계에 일치시킬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HS협약이 제정되면서 관세목적의 관세율표와 통계 목적의 무역분류표가 하나로 통합되는 진정한 국제통일 상품분류 체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품목분류 개요

품목분류는 HS협약에서 정한 분류표를 적용하여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HS번호를 찾는 작업입니다. 소, 돼지, 양 등 동물과 배추, 토마토 등 채소 등은 쉽게 분류가 되지만,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이나 신제품의 경우에는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모든 물품을 10자리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6자리는 국제공통으로 구분된 숫자이고, 나머지 네 자리는 협약국가가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의 두자리를 류(chapter), 그다음 네 자리를 호(Heading), 다음 6자리를 소호(Sub Heading)로 구성합니다. 커피 상품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HS, 관세율표, HSK의 비교(예: 제0901호)

[표-1] HS 0901(커피) 품목분류 체계

[표-1]을 보게되면 HS 09류는 커피, 차, 마태, 향신료 등이 분류됩니다. 이 중 0901호는 커피가 분류됩니다. HS협약에는 5가지의 소호가 분류되고, 우리나라는 관세율표에 이들 6단위별로 기본세율을 정합니다.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10단위로 분류한 HSK를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세부 10단위를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6단위 소호(Subheading)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HS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0901-90-1000호의 경우처럼 10단위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분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도는 8단위로 ITC(Indian Trade Classification)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커피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관련 HSK 10단위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2] 인도의 커피분류 체계와 [표-3] 멕시코의 커피 분류체계를 보면 종류도 다양하고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S는 6단위 국제공통기준에 1-4자리를 HS 협약체결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수입국에서는 6단위

이하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게 되면 교역 통계를 더욱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별로 다른 세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조제한 김 ; HSK 2106.90-4010), 라면(HSK 1902.30-1010) 등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10단위를 특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목번	-	품명 [조 명	기본세월		
1	840	2	한글	원문	기존제율	
0901			커피(북았는지, 카페인을 제거됐는 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캡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응물 (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ACAFFEINATED: COFFEE HUSIS AND SKINS;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IN ANY PROPORTION		
			- 커피(붂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Coffee, not roasted :		
0901	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Not decaffeinated :		
			아라비카 농원	Arabica plantation :		
0901	11	11	등급	A Grade	100%	
0901	11	12	B 등급	B Grade	100%	
0901	11	13	c 등급	C Grade	100%	
0901	11	19	7 E	Other	100%	
			아라비카 버찌	Arabica cherry :		
0901	11	21	AB 등급	AB Grade	100%	
0901	11	22	PB 등급	PB Grade	100%	
0901	11	23	c 등급	C Grade	100%	
0901	11	24	B/B/B 등급	B/B/B Grade	100%	
0901	11	29	7 E -	Other	100%	
			양피지를 빼앗은 것	Rob Parchment :		
0901	11	31	AB 등급	AB Grade	100%	
0901	11	32	PB 등급	PB Grade	100%	
0901	11	33	c 등급	C Grade	100%	



[표-2] 인도 커피 분류

[표-3] 멕시코 커피 분류

품목분류 검색방법

통상 인도에 있는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한국에서 적용하는 HSK 10단위를 알아야하고, 이를 인도 관세청에 수입 신고하기 위해서는 인도 세관의 HS를 알아야 합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HS는 국제 공통인 6단위를 기재하여야 하고, CEP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8단위의 품목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 관세청의 관세법령 정보 포털(https://unipass.customs. go.kr/clip/index.do)에 접속하면 '세계HS' 항목이 보이고, 맨 오른쪽에 나라별 국기중에서 인도를 선택하면 인도의 현재 8단위 HS번호와 각종 세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4] 관세 법령정보 포탈 메인화면



[표-5] 인도 HS속견표

인도 정부에서도 "인디안 트레이드 포탈(https://www.indiantrade portal. in/")에서 품목분류 검색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정보가 늦고 수시로 세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책자를 찾아보거나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을 받고 정확한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6] 인디안 트레이트 포탈 메인 화면

거래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래하는 품목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품목분류는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의적인 분류가 되지 않도록 HS협약에서는 분류 통칙과 해설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분류통칙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 GST 부과 이슈

이 지 민 국세관

- 주재원 GST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과세 동향
- 2 과세 쟁점과 관련된 참고할 인도 GST 법
- 3 대사관 대응방향

-

주재원 GST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과세 동향 2022년 5월 미국에 본사를 둔 Northern Operating System Pvt ltd.(이하 NOS)와 관련된 인도 대법원 판결에서 주재원 파견을 해외 본사가 인도 자회사에 일시적인 직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취급하여, 주재원의 월급과 수당에 18%의 GST를 부과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판례는 주재원들이 월급을 본사에서 달러로 받는다는 점, 본국의 사회보장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 주재원의 파견 및 복귀는 본사의 글로벌 정책을 따르며, 파견 기간 종료 후 본사로 복귀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사 파견 주재원의 실질적 고용주를 인도의 자회사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본사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NOS에서는 파견 주재원들의 급여(월급과 수당)는 미국 본사에서 달러로 주재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인도 자회사가 이 비용에 대해 미국 본사로 송금(reimburse)했는데 인도 국세청에서는 이 송금한 금액을 서비스 대가로 취급했습니다. 인도 자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인도 세법상 RCM(Reverse Charge Mechanism)으로 인도의 자회사에게 GST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후 인도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은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인도 자회사에서 직접 주재원에게 루피로 월급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인도 자회사와 본사간에 아무런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례와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많은 인도의 세금 전문가들도 2022년 당시에는 인도 자회사에서 본사로 주재원 월급 등 비용을 송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7-18 회계연도 GST 부과제척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과 맞물려 작년 4분기에 한국계 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과세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 국세청의 과세 기준이 명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지방청 조사관들이 판례와 일부 유사성이 있으면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아직 과세예고통지나 과세통지를 받지 않은 회사라도 언제 과세가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리스크를 떠안은 상황입니다.

인도 자회사 입장에서는 GST를 자진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ITC:Input Tax Credit)를 받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과세통지(Demand order)를 받은 이후에는 납부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매출세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미 ITC가 많이 적립되어있는 기업의 경우는, 자진납부하는 GST가 그대로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GST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납부할 경우 패널티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는 납부해야합니다.

외국계 기업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인도 국세청 본부는 2023년 12월 각 지방청으로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본사와 인도 자회사간 계약 조건을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신중히 고려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2

과세 쟁점과 관련된 참고할 인도 GST 법

간주공급 (Transactions Treated as Supply)

인도 GST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관계자 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대가지급이 없더라도 과세대상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5% 이상의 직간접 지분관계가 있을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주재원 파견과 관련해서 인도 자회사가 해외 본사로 대가지급이 없더라도 간주공급으로 과세 가능합니다. 대가 지급이 없다면 GST법상 '거래가액' 판단기준을 사용하고, 이 경우 거래가액은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재원에게 지급된 월급과 수당이 과세대상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본사로 주재원 관련 비용을 송금하지 않더라도 인도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얼마든지 논의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면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과세체계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지급이 없다면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역부과 메커니즘 (RCM: Reverse Charge Mechanism)

인도 GST 법상 GST 납부 책임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 GST 납부 책임이 공급업자에서 수취업자로 전환되는 것을 "역부과 메커니즘(RCM)"이라고 합니다. 그 특정 조건 중 하나가 외국 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입업자의 경우입니다. 해당 NOS 판례에서는 인도 자회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자회사는 RCM으로 GST를 납부해야합니다. RCM에 따라 GST를 납부하는 수취인은 매입세액공제(ITC: Input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제도"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용역을 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계 법인 중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대리납부 하는 경우는 찾기 힙듭니다.

GST 부과제척기간

GST법에 의하면 GST 연차신고는 회계기간(Y-1년 4월~Y년 3월) 종료일이 속하는 12월 말까지 해야 하며, 연차신고 후 3년 이내까지(부정한 방법일 경우 5년) 세무조사관이 추징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처음 시행 된 후 4개 연도는 과세당국에서 연차신고 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을 모두 연장 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신고기한 (기존)	연차신고기한 (연장)	추징 가능 기한 (부과제척기간)
FY17-18	18년 12월 31일	20년 1월 31일	23년 12월 31일
FY18-19	19년 12월 31일	20년 12월 31일	24년 4월 30일
FY19-20	20년 12월 31일	21년 3월 31일	24년 8월 31일
FY20-21	21년 12월 31일	22년 2월 28일	25년 2월 28일
FY21-22	22년 12월 31일	기존과 같음	25년 12월 31일

17-18 회계연도 부과제척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작년 하반기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과세통지를 수령했습니다. 여기서 세무조사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탈세(GST법 74(1)항)라고 판단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2025.12.31까지 2년 연장됩니다. 다만, 인도 국세청은 2023년 12월 지침을 통해 74(1)항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사기·고의적 허위진술·사실 은닉의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그 증거가 통지서에 적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사관 대응방향

대법원에서 판시한대로 주재원의 실질적 고용주를 해외에 있는 본사로 볼 수 있다면, 주재원 파견을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 인도 법 체계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묻는 분도 계시는데, 이중과세 문제를 다루는 한-인도 조세조약은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 등을 규정하는 것이고 간접세는 각 국가의 고유의 권한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다국적기업에서 주재원 파견이 매우 보편화 되어 있는 시대에 이런 과세는 세계적으로 흔한 것은 아니고,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고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과세가 되는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그 기준이 명확화 되어 있지 않다는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법원 판례와 사실관계가 전부 일치한다고 했을 때는 과세되는 것이 맞겠지만, 일부의 유사성만 있을 경우 과연 과세가 되는 것이 맞을까 했을 때,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진출한 많은 외국계 기업들도 결국 주재원 GST 과세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차이점을 강조하며 주재원의 실질적 고용주는 인도 자회사라고 주장합니다.

주재원 파견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한 사실관계를 모두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일례로 한국에서 사회보장을 유지하지 않으려면 주재원들이 한국 회사를 퇴사하고 인도에 와야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한국 회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월 말 개최된 GST 부과이슈 관련 간담회 후속조치로 인도진출 한국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0여개 기업이 응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공동 입장을 도출했습니다. 적어도 어느 경우 과세가 되고, 어느 경우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회사입장에서도 경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대사관에서는 대법원 사례와의 차이에 주안점을 두고 인도 국세청에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대부분 인도 자회사에서 직접 주재원에게 월급을 루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인도 자회사와 본사간에 아무런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재원 월급을 본사가, 수당을 인도 자회사가 지급하는 경우라도 본사 지급분에 대해서 자회사가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인도 자회사가 주재원들에게 월급을 루피로 직접 지급하고, 본사와 자회사간에 아무런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례와 명백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이 과세기준에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도간에는 주재원들의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CEPA 협정과 사회보장협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도 대법원 판례상 과세요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의 NOS회사는 미국 자회사로 인도와 미국 사이에는 이와 같은 협정이 없습니다. 주재원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주재원들의 인도 파견 시 한국의 사회보장이 유지되는 것은 한-인도간 협정 CEPA 및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의 회사 주재원에게 한국에서 사회보장을 유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두 나라간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관련국 대사관과 함께 인도 국세청측에 기업들이 자진 납부하게 될 경우 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면제될 경우 자진납부를 하고 매입세액공제(ITC)를 받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주재원 GST 과세건에 대해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법원에 소송하는 것을 택했으나 대법원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도 국세청에서 하루빨리 명확화된 규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주재원GST 관련된 동향과 여러 가지 과세 쟁점 및 대사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mlee21@mofa.go.kr



글로벌 기업의 인도 내

GCC(Global Capability Centers)* 설립 동향과 전망

이 정 선 KOTRA 인도비즈니스센터운영팀장

- 1 글로벌 기업 인도 GCC 설립 수요 급증
- 2 방대한 테크(tech) 인재풀이 GCC 설립 유인
- 3 주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글로벌기업 GCC 유치에 적극 참여
- 4 미국, 캐나다 중심에서 EU, 아시아 기업까지 설립 가세, 우리 기업도 관심 필요

- #1 일본의 구글페이에 해당하는 라쿠텐페이는 라쿠텐그룹 벵갈루루 글로벌역량센터(GCC: Global Capability Centers, 이하 GCC로 통일)에서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앱에 분할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웹사이트/앱 방문자를 처리하는 모든 기능이 벵갈루루 GCC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 #2 JP Morgan Chase& Co는 인도 내 5개 지역에 GCC가 있고, 50,000명 이상이 계량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리콘밸리은행 뱅크런 사태가 촉발하자, 신규 은행 계좌 신청이 폭증했는데, 벵갈루루,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등에 있는 GCC 내 기술팀의 60%가 업무에 전격 투입되어 고객 베이스를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 #3 세계 최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인 SAP SE는 R&D의 40% 이상, 연간 특허출원의 1/4이 인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인도 GCC 설립 수요 급증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내 GCC를 세우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80년~2000년대까지는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GCC를 세웠지만, 이제는 기술개발 및 연구 등으로도 역할이 확장되면서, 전세계 GCC의 45% 이상이 인도에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Nasscom-Zinnov(인도소프트웨어산업협회-컨설팅회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FY23년(2023.3월) 기준, 인도 내 GCC 수는 1,580개, 고용된 인력만도 166만명 정도입니다. FY25년(2025.3월)까지 이 수는 1,900개 이상으로 증가하고, 고용 인력 수도 200만 이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Fortune 2000 기업 중에서도 2030년까지 인도에 GCC를 세우려는 기업 비중은 현재 20% 수준에서 5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EY는 2030년이 되면 인도 내 GCC 수가 2,400개에 달해, 연평균 100개 이상의 GCC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인력 수도 현재의 3배에 가까운 450만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도 GCC 설립 추이 및 예상치

	2020-2022	2023-2025 (예상치)	2030 (예상치)	
GCC 설립 건수	1,580+	1,900+	2,400	
GCC 채용인력	166만+	200만+	450만+	
통계자료원	Nassco	Nasscom-Zinnov		

자료원: Nasscom-Zinnov, EY

분야별로는 테크 분야(42%)에 가장 많은 GCC가 집중되어 있고, 은행/금융/ 보험업(20%), 제조업 R&D 센터(15%), 컨설팅(10%), 헬스케어/바이오테크(8%) 순으로 GCC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GCC 설립 비중

GCC 분야	비중 (%)	진출기업 예시
테크	42	Google, IBM, Apple, Salesforce, Microsoft, Adobe, HP 등
은행/금융/ 보험 등	20	Morgan Stanley, JP Morgan, Wells Fargo, Bank of America, Citi, Barclays 등
제조업	15	Mercedes Benz R&D, Samsung Semiconductor Research, Micron, Qualcomm, Continental, Intel, AMD, Boeing, Airbus, Bosch 등
컨설팅	10	EY, KPMG, Deloitte Consulting, Accenture, PwC, S&P Global 등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8	BMS, Astra Zeneca, Providence, Baxter, GSK, Optum 등
기타	5	Amazon, Walmart, Uber, 7-Eleven 등

자료원: Nasscom-Zinnov, EY

2

방대한 테크(tech) 인재풀이 GCC 설립 유인

인도에 인구가 많은 만큼 테크인재풀도 크다 보니, 이를 활용하려는 글로벌기업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매년 배출되는 엔지니어만 150만명, MBA 졸업생이 30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개발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례로 2023년 11월에 현지 신문에 실린 한 기사 에서는 인도 개발자들이 Microsoft의 코드 호스팅 플랫폼 GitHub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 기사에 따르면, 2022년 970만 명에서 2023년에는 1,3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미국을 뛰어넘어 GitHub에서 가장 큰 개발자 커뮤니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x27;India to pip US as largest GitHub base by 2027', The Times of India

여기에 더해, 인도 인구의 10% 가량인 약 1.3~1.4억 명이 영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상첨화로 인건비까지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월별 평균임금 수준이 중국의 30% 내외에 그칩니다.



자료원: ILO 주(기준년도): 중국('21), 말련('20),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22), 캄보디아('19)

내수 시장이 크고, 영어에 능통하고 가성비 뛰어난 기술자/개발자 풀이 넘쳐나다 보니, 인도가 글로벌기업에게 최적의 GCC 선택지로 부상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인도가 밸류체인 하단의 제조업 육성에만 열심인 것으로 보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기업의 GCC를 통해 밸류체인 상단의 역할까지 파고들고 있었나봅니다.

3

주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글로벌기업 GCC 유치에 적극 참여 글로벌 기업의 GCC 수요를 확인한 타밀나두 주에서는 이번 2024-2025 예산안에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 최초로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걸었습니다.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GCC 설립 첫 해에는 30%, 2년차에는 20%, 3년차에는 10%의 급여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월급여가 10만 루피(약 160만원) 이상인 연봉이 높은 일자리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상 규모만 229.5억 루피(약 3,700억원)입니다.

타밀나두주 주도(state capital)인 첸나이에는 이미 상당수의 GCC가 포진해 있습니다. 인도 전역 GCC 개수 기준으로는 9% (150개 이상), 채용 인력수 기준으로는 10%가 첸나이에 소재해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스탠다드차터드, 씨티그룹, 바클레이스, 아마존, 월마트, 버라이즌, 아스트라제네카, 페이팔, 쉘, BNP 파리바, 캐터필러, 웰스 파고, 트랜스 유니온, ZF, 포드 등이 있습니다.

타밀나두 주는 이번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 첸나이를 주축으로 해서 코임바토르(Coimbatore)와 마두라이(Madurai) 등의 도시 등으로도 GCC를 확대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GCC가 400개나 집중적으로 포진한 벵갈루루가 위치한 카르나카주에서도 GCC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미국, 캐나다 중심에서 EU, 아시아 기업까지 설립 가세.. 우리 기업도 관심 필요 지금까지는 인도에 소재한 GCC의 70% 이상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럽, 호주,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의 GCC 설립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Fortune 500 기업의 인도 GCC 설립을 지원하는 ANSR은 인도 내 GCC가 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변신하고자 방대한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을 추진중인데, 기술인재를 대량으로 확보 가능한 곳은 인도 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기술인력 활용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도 GCC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벵갈루루, 첸나이 등 1선(tier1) 도시가 높은 임차료와 인건비 등으로 부담된다면, 인도 2선(tier2) 도시^{*}로 시아를 확대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기존 GCC의 확대를 검토 중인 글로벌 기업과, 부담 없이 인도 내 첫발을 내딛으려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2선(tier2) 도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1선 도시 대비 50%가량 저렴하고, 테크 풀의 인건비도 25~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1,580개 GCC 중, 약 150개가 2선 도시에 소재해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조만간 수요가 30~40%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암다바드(Ahmedabad), 미수루(Mysuru), 바도다라(Vadodara), 나시크(Nashik), 부바네스와르 (Bhubaneswar), 코임바토르(Coimbatore)



인도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제한 산업 및 법인형태 비교)

유 지 혜 대사관 경제과 자문 변호사 (버드트리 대표, 미국변호사)

- 1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
- 2 인도 진출 유형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인도 시장은 글로벌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이러한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장려 정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러가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Make in India" 정책을 필두로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는 등 소매, 방위사업,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FDI 자유화 확대를 통해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 대한 FDI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인도는 약 848억 달러, 2023년 709억 7천만 달러 FDI를 유치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글로벌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FDI 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23)에 따르면 인도는 2021~22년 FDI 대국으로 등장하여 세 번째로 높은 외국인 투자를 확보했으며, 지난 10년간(2014년 4월~2023년 12월) 유입된 FDI 총액은 6479.6억달러로서 이러한 FDI는 17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이루어졌고, 인도 내 33개 연방직할지 및 주, 63개 산업 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규모 소비인구, 숙련된 인력, 친기업적 환경을 갖춘 인도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로서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여 성공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쟁점이 해당 산업분야에 투자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진출 시 가장 적합한 법적 형태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이하에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 투자자로서 인도에 진출 시 가장 먼저 유의하여야 할 (1)산업 분야별 외국투자 허용 여부와, (2)진출형태에 대하여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 경로입니다. 인도의 FDI는 외환 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 1999) 및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의 지침 하에 운영되며, 이는 투자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자동승인 경로(Automatic Route)를 통해서는 정부 승인 없이도 제조, 통신 서비스, 정보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대 100%까지의 지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 승인 경로(Government Route)에서는 민감한 부문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정부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의 투명성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https://www.ibef.org/economy/foreign-direct-investment

아래 표와 같이 인도 정부는 수년에 걸쳐 외국인 투자를 상당 부분 자유화하여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100%의 FDI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승인 경로 또는 정부 승인 경로 하에서 비거주자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민간 부문 중 은행업의 경우 자본금의 최대 74%까지만 외국인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 중 49%까지는 자동 승인, 49% 이상 74%까지의 투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인쇄 매체, 뉴스 및 시사 문제를 다루는 언론 및 출판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6%까지만 외국인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정부 승인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FDI 투자 지분 한도를 두고 있는 인도 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독 투자가 아닌, 인도 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tic Route 100%		Auto			
No.	Industry	Automatic	No.	Industry	Automatic	Government
1	공항 Airports (Greenfield and Brownfield)	100%	1	은행(공공부문) Banking (Public sector)		20%
2	자동차 부품 (Auto components)	100%	2	방송 컨텐츠 서비스 (Broadcasting Content Services, FM Radio, uplinking of news and current affairs TV Channels)		49%
3	자동차 (Automobiles)	100%	3	식품소매무역 (Food Products Retail Trading)		100%
4	생명공학 (Biotechnology (Greenfield))	100%	4	다중브랜드 소매 무역 (Multi-Brand Retail Trading)		51%
5	화학 (Chemicals)	100%	5	은행(민간부문) (Banking (Private sector))	49%이하	49%초과-74%이하
6	제조 (Manufacturing)	100%	6	방위 (Defense)	74%이하	74%초과
7	철도 (Railway Infrastructure)	100%	7	헬스케어(브라운필드) (Healthcare (Brownfield))	74%이하	74%초과
8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100%	8	의약품(브라운필드) Pharmaceuticals(Brownfield)	74%이하	74%초과
9	도로 (Roads and Highways)	100%	9	동신서비스 (Telecom Services)	49%이하	49%초과
10	전자시스템 (Electronic Systems)	100%	10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100%	

[표-1] 인도 FDI 부문별 투자 제한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인도의 FDI 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의 준수는 물론 해당 산업 분야의 규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도 경제 내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의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밀한 시장 분석과 함께 전문적인 법률 및 재무 쟁점에 대한 검토가 투자 결정 과정에 있어 첫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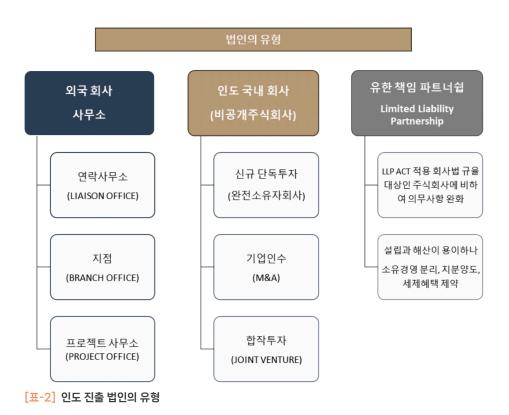
2

인도 진출 유형

인도에서의 비즈니스 운영은 여러 법적 조직 형태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s), 유한책임 파트너십(LLP), 파트너십(Partnership), 및 주식회사(Company)를 포함합니다. 추가로, 인도 비거주 외국 회사는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지점(Branch Office),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등의 형태를 통해 인도 내에서 제한적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형태 중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_인도, 14-16 페이지 (법무부, 2023)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 구조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직접 투자에 제한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 및 개인이 인도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연락사무소,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의 설립이나 인도 내 법인으로서 유한책임 파트너십(LLP) 또는 주식회사(Company) 형태의 설립으로 한정됩니다.



각각의 법적 구조는 특정한 장단점과 세부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된 조직형태에 따라 설립 요건, 투자자의 책임, 세금 부담, 운영의 유연성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도 내에서의 사업 확장을 고려 중인 한국 기업 및 개인은 본인의 비즈니스목표와 전략에 가장 적합한 법적 조직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한국 기업들이 합작투자 또는 기업인수를 통하여 인도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인도는 한국과 매우 상이한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진출 시 적용될 수있는 인도 현지의 복잡한 법적 및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경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연락사무소(LO)/지점(BO)/프로젝트오피스(PO)

외국회사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점(Branch Office), 프로젝트오피스 (Project Office)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본사 및 그룹사의 인도 내 대표행위(Representing), 수출입 증진, 본사와 인도 회사간 기술, 상사 협력, 본사와 인도 회사간 연락업무에 한정되며, 직간접적인 상업, 무역, 산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의 운영비용은 본사로부터 들어오는 송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점은 인도 비거주자인 외국회사(본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점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상품 수출입, 자문서비스, 본사의 연구활동, 인도 회사와 본사 간 기술 및 재무적 협력 증진 업무, 본사의 인도 내 매매활동 대리, 인도 내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서비스 공급, 본사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기술지원, 항공/해운회사 지점 업무 등에 한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지점은 본사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활동 범위는 중앙은행 승인 시 추가적인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외국회사가 인도에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설립하는 사업장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인도 회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하면 PO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사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PO 설치를 위해 RBI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프로젝트가 끝나면 인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2) 주식회사(Company)

인도에서의 주식회사는 비공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와 공개회사 (Public Company)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하게 되면 설립절차 및 요건도 비공개 주식회사보다 까다롭고, 기업활동 및 주식을 공개해야 하고, 정부의 조사대상이 되며, 직원 해고와 같은 이슈도 회사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인도내 자회사로서 소규모로 빠르게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회사 보다 비공개회사 형태가 비교적 선호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법인 유형이 비공개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모델이 아닌 파트너십 형태로 설립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파트너십(LLP) 형태의 법인이 선호됩니다.

(3)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파트너십은 인도 LLP법(LLP Act, 2008)에 의해 규율됩니다. LLP는 영속성을 지닌 법인으로 파트너들과 분리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이며, 소송 당사자가 될수 있습니다. LLP의 파트너들은 회사 채무 등에 대해 출자액의 한도 내로 연대책임을 집니다. LLP법에 따라 법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LLP를 설립할수 있습니다. LLP법은 회사법 보다는 적은 수준의 법률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운영상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주식 이전 가능성 등 주식회사가 지닌 장점을 향유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	비공개 주식회사	유한책임 파트너십
법적형태	외국회사	외국회사	외국회사	인도법인	인도법인
설립요건	순자산 US\$50,000 과거 3개년 회계연도 수익입증	순자산 US\$100,000 과거 5개년 회계연도 수익입증	프로젝트 계약 체결 또는 설립 승인	회사법 적용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최소 주주 2인, 이사 2인	LLP법 적용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최소 파트너 2인
책임	외국회사가 책임	외국회사가 책임	외국회사가 책임	주주 주식 보유량 한도	파트너 출자금으로 한도
법인명	외국회사명과 동일	외국회사명과 동일	외국회사명과 동일	별도 법인명 기업등록청 승인 필요	별도 법인명 기업등록청 승인 필요
허용활동	네트워킹, 시장 발굴, 사업 홍보	수출입, 컨설팅, 전문 서비스 등 모회사와 동일한 사업 수행	수주 프로젝트 계약상 업무	법률상 금지되지 않은 모든 사업 활동	법률상 금지되지 않은 모든 사업활동으로 산업분야별 제한은 없으나, 주로 서비스산업 수행에 적합
존속기간	3년간 라이센스 부여, 3년마다 갱신 가능 단, 비은행 금융 회사(NBFC), 건설 및 개발 산업의 경우 2년 기간이 만료되면 FDI 정책에 따라 폐쇄하거나 합작/단독 자회사로 전환해야 함.	등록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동안(프로젝트 종료시까지) 유효	해산하거나 특정 변경 또는 등록 말소시까지 존속	해산할 때까지 또는 LLP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존속
설립기간	2-6개월	2-6개월	1-2개월	1개월	1개월
과세	과세대상 아님	외국 기업 과세표준에 따라 1,000만 루피 이하 소득시 41.60%, 1억 루피 이하 소득시 42.43%,1억 루피를 초과시 43.68%	실효세율 43.68%	매출액이 최대 40억 루피 미만시 25%, 이상시 30%	실효세율 34.94%

[표-3] 인도 진출 법인 유형별 주요 특징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인도 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생산성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등 인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또한 FDI는 첨단 기술과 경영 전문 지식의 이전을 촉진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결국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소비자 지출을 늘리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인도 정부는 2025년도 연간 1,200억~1,6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질의 FDI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최적화하고 사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FDI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 시장인 인도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투자 계획 및 법인 설립 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은 인도 사업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인 만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